10. 선 거 규 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【목적】 이 규정은 협의회 회장,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적용범위】 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【선거권】 ①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) 3개월 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협의회 정관 제8조 (회비)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4조【선거인】 ①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,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..
②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,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미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④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.
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.
⑥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⑦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【피선거권】 ① 임원의 임기종료일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) 3개월 전까지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선임에 피선거권이 있다. 다만,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

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
1. 회원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
2.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② 회원이 정관 제8조(회비)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6조【선출방법】 ① 회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기간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인준을 거쳐 선출하고,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.

② 감사, 전형위원은 선거(총회)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
제7조【선거일】 ①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다만, 결원된 임원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【선거운동 및 기간】 ① “선거운동”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거나,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·의사의 표시·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

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,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공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②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

제9조【당선결정】 ① 회장의 당선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.

② 전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.

제10조【선거관리】 ① 협의회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·관

리한다.
② 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관리하며,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에는 상임이사가 한다. 이 경우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이사 중에서 3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【협조의무】 ① 협의회는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② 협의회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12조【위원회의 설치】 ① 협의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15일전에 구성하고, 존속기간은 선거사무 종료시까지로 한다.
② 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자격을 상실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중 3분의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에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·날인한 후 비치한다.

제13조【위원회의 직무】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
2. 선거인명부의 확정
3.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게도
4. 선거관리,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
5. 투표의 유·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
6.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
7.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
8. 당선인의 확정
9.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

10.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
11. 유·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.

제14조【선거·투표·개표관리자】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·투표관리자·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·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 [별지 제18호]을 작성한다.

제 3 장 선거절차

제 1 절 입후보 및 등록

제15조【선거공고】 ①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

1. 선거하여야 할 임원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선거일시
4. 후보자등록기간 및 접수장소
5. 투표소의 위치
6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【후보자등록기간】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(공고일 포함)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【후보자등록신청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·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

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.

1. 후보등록신청서 [별지 제19호]
2. 이력서
3. 사업자등록증명원
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5.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

제18조【등록심사 및 접수】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.
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, 자격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9조【입후보자 공고】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등록사항을 공고한다.

제20조【등록취소 등】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·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·사망하거나,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2 절 투　　표

제21조【투표소】 ①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.
②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2조【투표】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②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.
③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“○”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제 3 절 개　　표

제23조【개표】 ①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.
②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,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 날인한다.
③ 의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을 선포한다.
④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,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.

제24조【취임승낙】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5조【기록보존】 선거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.

부　　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